

2023년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

(예비)사회적기업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
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「2023년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」
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. 17.

충청남도지사

1 사업개요

가. 추진 근거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4조(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)
-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
-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

나. 사업 내용

- (예비)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
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

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

가. 지원대상

-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 사업장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
고용한 기업
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, 부처형)

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제외 대상

- ① 유급 근로자(자체고용근로자)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
 -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 사실,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
- ②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중에 있는 기업
- ③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
(감원)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
 - 단,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
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
 -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(감원)한
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
- ④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
- ⑤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
받거나 받은 기업
- ⑥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- ⑦ 기타 충청남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,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
으로 명시한 기업

나. 지원인원

- 예비사회적기업 : 기업당 최대 1명
- 인증사회적기업 : 기업당 최대 2명(단,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 3명)
※ 동일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
- 다만,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
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
- (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)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
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 지원('15.9.1.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)
- (지원한도내 고령자 없을 경우) 고령자를 전문인력 채용해야 1명
추가 지원

다. 지원수준 및 자격 요건

지원수준	250만원 한도
전문분야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경영(기획, 인사·노무, 경영 및 진단 등) ② 회계(세무, 감정평가 등) ③ 마케팅(광고, 홍보, 상품기획, 행사기획, 무역, 영업 등) ④ 능력개발(교육훈련 등) ⑤ 법률(법무, 지적재산권 등) ⑥ 제품·기술개발,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 문화·예술·디자인·영상·방송(작가, 출판, 창작, 공연, 영화, 연극 등) ⑧ 정보통신(컴퓨터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·웹 정보시스템 등) ⑨ 기타(①~⑧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) *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
경력요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경영, 회계, 마케팅, 능력개발, 법률, 제품·기술개발,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문화·예술·디자인·영상·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③ 위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(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)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, 심사하여 지원 가능 ④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 한 자 ⑤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,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2년 이상 재직 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
자격요건	<p>가. 기사·산업 기사·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</p> <p>나.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, 「변리사법」에 따른 변리사,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, 「관세사법」에 따른 관세사, 「공인노무사법」에 따른 공인노무사,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,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</p> <p>다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, 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, 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, 시행령 제9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, 우수 숙련기술자</p>
학력요건	○ 각 전문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(수료자를 포함함)

라. 지원기간 :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

○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(지정)이 취소(반납)되는 경우 취소(반납)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

마. 최대지원기간

구 분	전 문 인 력
지원가능 기 간	(예비) 지정기간내 (인증)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
지원기간 기산방법	(예비)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2년 (인증)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3년

※ 전문인력지원 지원기간 중 인증·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

바.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

○ 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,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 급여의 일정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*

－ 전문인력 지원금 월 250만원 한도 상향은 '23년 약정체결부터 적용

* 예비사회적기업 10%(1차년도) → 20%(2차년도)

* 인증 사회적기업 20%(1차년도) → 30%(2차년도) → 50%(3차년도)로 차등 지원

○ 월 250만원은 「근로기준법」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

* 공제전 임금총액 기준.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, 일정금액으로 지급 될 경우(고정OT수당, 고정연장수당 등)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

사. 지원분야

○ 지원분야에 대한 지원인원 제한은 없으나 최대 지원인원 내에서 지원 가능하고, 한 분야에 최대 지원기간 동안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

※ 지원가능기간(예비 3년, 인증 5년)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분야는 지원 가능

3 지원절차

가. 지원금 신청방법

- 사업참여기업은 임금지급일에 참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매월 15일까지 「지원금 신청서」를 작성하여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[별지 제9호서식]
- 월중에 중도탈락,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참여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참여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고, 익월의 지원금 신청 시 그 내역을 포함하여 신청
- 사업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'5일 이내'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
나. 제출방법(서면접수 불가)

-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(SEIS) (www.seis.or.kr)을 통해 신청해야 함

다. 제출서류

- 신규 참여기업
 - ①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[별지 제1호서식]
 - ②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[별지 제2호서식]
 - ③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(대표자용) [별지 제7호의2서식]
 -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팔소사항 포함), 사회적기업 인·지정서
 - ⑤ 다음의 사회적(경제)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
 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SEIS)의 e-러닝 이수내용(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)
- *'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'이수(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)

- 지방자치단체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,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(5시간 이상 교육 과정, 공식 인증된 수료증)

※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

○ 재심사 참여기업

- ①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[별지 제4호서식]
 - ②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[별지 제5호서식]
- ※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,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

라. 신청기간 : 상시접수

-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기간 운영
- ※ 예산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 및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
마. 사업설명회

- 때 · 곳 : 2023.1.27.(금) 14:00 / 예산청소년수련관(비전홀)
- 주요내용 : 재정지원 일반(일자리창출, 사회보험료, 사업개발비) 사회적가치(SVI) 이해 등
- 주관주최 :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, 충청남도

4 유의사항

-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「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.
-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5 문 의 처

○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중간지원기관으로 문의

- (상담 및 컨설팅) 권역별 지원기관

기 관 명	전 화 번 호
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	041-415-2012

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SEIS)관련 문의

기 관 명	전 화 번 호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	1661-4006

- (도) 담당부서

기 관 명	전 화 번 호
충청남도 경제정책과	041-635-3321

- (접수) 시군 담당부서

시·군	부 서	전화번호	시·군	부 서	전화번호
천안시	일자리경제과	(041) 521-5612	금산군	지역경제과	(041) 750-2659
공주시	지역활력과	(041) 840-8598	부여군	경제교통과	(041) 830-2264
보령시	새마을공동체과	(041) 930-2333	서천군	지역경제과	(041) 950-4126
아산시	일자리경제과	(041) 540-2078	청양군	사회적경제과	(041) 940-4074
서산시	일자리경제과	(041) 660-2590	홍성군	경제과	(041) 630-1355
논산시	지역경제과	(041) 746-6028	예산군	경제과	(041) 339-7283
계룡시	일자리경제과	(042) 840-2583	태안군	주민공동체과	(041) 670-6163
당진시	공동체새마을과	(041) 350-3186			

(예비)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지 제1호서식]

(양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20일			
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(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,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)					
기 관 명	대 표 자(주민번호)	(-)			
소 재 지	연락처(휴대폰)				
인증(지정)번호	사업자등록번호				
유급 근로자수	사업분야				
조직형태	1.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단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단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민법상 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회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한회사 <input type="checkbox"/> 합자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익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영리민간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비자생활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협동조합연합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영농·영어조합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·어업회사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법인, 비영리단체 2.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으로 보는 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문화단체 등)				
인증(지정)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서비스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자리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사회 공헌형(☎[], ☎[], ☎[]) <input type="checkbox"/> 혼합형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형				
주된 목적					
근로자 현황 * 현재기준	전체유급근로자수(A) 명	취약계층근로자수(B) 명			
		취약계층 비율(B/A) %			
기초지원인원	분야	인원			
신청분야	분야	인원			
중견 재정지 원 사업참 여 여부	구분	재정지원사업명	최초지원일	지원기간	지원연차
	예비 사회적기 업	일자리창출지원 ~
		사업개발비지원 ~
		전문인력지원 ~
	인증 사회적기 업	일자리창출지원 ~
		사업개발비지원 ~
전문인력지원	 ~	
중복지원여부				부처(자치단체)명	
*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(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)				지원내용	
				지원기간	
				지원금액	
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신청기업 대표자					(서명 또는 인)
기초자치단체장 귀하					

(뒷쪽)

<p>◆ 구비서류</p> <p>1.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</p> <p>2. 사업장정보수집 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</p> <p>3. 다음의 사회적(경제)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(㉓, ㉔ 중 택일)</p> <p>㉓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SEIS)의 e-러닝 이수 내용(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)</p> <p>* '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'을 이수하여야 함(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)</p> <p>㉔ 지방자치단체,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(5시간 이상 교육과정, 공식 인증된 수료증)</p> <p>*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</p> <p>※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(스캔을 통한 전자화),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</p>
<p>◆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</p> <p>1.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절한 지급여부,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(휴대폰번호)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</p> <p>2. 사업참여 제한 대상(사업참여기업 대표자·등기임원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)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.</p> <p>3.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 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.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~500% 이내에서 제재부금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</p>
<p>◆ 작성방법</p> <p>1) 사업분야 구분</p> <p>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·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</p> <p>2) 신청분야</p> <p>○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(기획, 인사·노무, 경영 및 진단 등) ②회계(세무, 감정평가 등) ③마케팅(광고, 홍보, 상품기획, 행사기획, 무역, 영업 등) ④능력개발(교육훈련 등) ⑤법률(법무, 지적재산권 등) ⑥제품·기술개발,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·예술·디자인·영상·방송(작가,출판, 창작, 공연, 영화, 연극 등) ⑧정보통신(컴퓨터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웹 정보시스템 등)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</p> <p>*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</p> <p>3) 최초지원일</p> <p>- 예비사회적기업: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</p> <p>- 인증사회적기업: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(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)</p> <p>4) 지원기간: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</p> <p>5) 지원연차: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</p> <p>* 예시: 예비 1년, 예비 2년, 인증 1년, 인증 2년, 인증 3년</p> <p>6) 중복지원여부: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(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)</p> <p>* 예시: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</p>

(예비)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지 제2호서식]

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	
<p>◆ 법인 또는 단체 연혁</p>	
<p>◆ 전문인력 활용 관련</p>	
필요성	
활용계획	<p>*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</p>
기대효과	

(예비)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지 제5호서식]

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					
◆ 사업개요					
① 기업명			인증·지정번호		
② 지원연차	<input type="checkbox"/> 예비1년차, <input type="checkbox"/> 예비2년차,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증1년차,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증2년차,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증3년차				
③ 지원기간	○ 20 ~ 20				
④ 전문인력 참여현황	성명		분야명		채용 유형 <input type="checkbox"/> 경력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자격증소지자 <input type="checkbox"/> 학위취득자
	성명		분야명		채용 유형 <input type="checkbox"/> 경력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자격증소지자 <input type="checkbox"/> 학위취득자
◆ 보조금 지원내역					
* 해당 지원약정서에 따른 마지막 월 지원신청금액을 포함하여 작성					
⑤ 월별 지원내역					
해 당 월	지원금액	해 당 월	지원금액	해 당 월	지원금액
월	원	월	원	월	원
월	원	월	원	월	원
월	원	월	원	월	원
월	원	월	원	월	원
월	원	월	원	월	원
월	원	월	원	월	원
월	원	월	원	월	원
월	원	월	원	월	원
월	원	월	원	월	원
⑥ 총 지원금액: 원(마지막 월 신청금액 포함)					

◆ 전문인력 활용성과 관련	
⑦ 활용성과	
⑧ 계속지원 필요성	
⑨ 향후 활용계획	
❖ 작성방법 ① 기업명 및 인증·지정번호 작성 ② 지원약정서의 지원연차를 참고하여 해당 연차에 체크 ③ 지원약정서의 지원기간을 참고하여 작성 ④ 전문인력의 성명, 전문분야 및 전문인력 신청당시 채용유형 작성 ⑤ 해당 약정기간 동안에 해당 전문인력에 대해 월별 지원받은 금액 작성 ⑥ 월별 지원받은 금액 합계액 작성 ⑦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활용성과를 자세히 기재,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⑧ 재심사 참여기업일 경우 전문인력의 계속 지원 필요성 작성 -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 작성 ⑨ 향후 활용계획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	

(예비)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지 제7호의2서식]

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(대표자용)

1.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

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, 전문인력지원, 사업개발비,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(고용조정, 고용유지조치, 보험료, 임금체불 등)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,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.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(감원) 사실이 있나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예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2.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예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3.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예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4. 4대보험료 체납이 있나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예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5.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예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6.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이 있나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예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6-1. 참여근로자 중 대표자,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예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7.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예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8.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나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예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9.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나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예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
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* 사업참여 제한 대상(사업참여기업 대표자·등기임원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)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.

대표자: (서명 또는 인)

2. 사업장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
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, 전문인력지원, 사업개발비,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(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·관리하고 있습니다.

- 사업장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참여자 선정·관리,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,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, 휴·폐업여부 조회, 임금체불 조회,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
-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: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전화번호(휴대폰)
-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
- 사업장정보의 제공: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, 지원요건 충족 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

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·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(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기부등본 등)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성 명	
주 민 등 록 번 호	-
전 화 번 호 (휴 대 폰)	